
2026년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운영 지원사업 공모안내서

2025. 12.

목 차

I. 사업 공모 안내	3
II. 지원사업 상세 안내	6
1. 지원사업 지원 내용	6
2. 추진절차 및 체계	9
3. 사업 신청 안내	11
4. 사업 신청 유의사항	14
III. 평가 절차 및 안내	17
1. 수행기관 선정	17
2. 중간·최종 평가	22
IV. 기타 참고사항	24
1. 협약 및 사업수행 관리	24
2. 회계정산	28
3. 기타 참고사항	30

I

사업 공모 안내

구분	주요내용
사업 목표	○ 안정적인 마이데이터 제도 운영 및 지속적인 전송체계 고도화
사업 내용	○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따라 마이데이터의 중계 업무*를 수행하고, 마이데이터 유관 사업 및 참여기관 연계 지원 *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 및 정보 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업무
사업 기간	○ 협약 체결일 ~ 2026년 12월 31일(약 11개월) ※ 추진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
지원 금액	○ 정부지원금: 7억 원 이내(부가세 포함) ※ '26년 예산의 최종 확정여부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
지원 대상	○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42조의9제1항제1호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(중계전문기관)으로 지정되어 중계 인프라를 운영 중인 기업 또는 기관(1개 사)
지원 내용	○ 중계전문기관 운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용 지원
수행 내용	○ 표준 중계모델 기반의 중계시스템 운영 - 마이데이터 표준 중계모델 기반으로 구축된 중계시스템 운영 - 중계시스템 운영 체계 고도화 수행 ○ 마이데이터 유관 사업 및 참여기관 간 연계 지원 - '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', '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운영관리 사업' 마이데이터 유관 사업간 연계 지원 - 정보전송자, 정보수신자 등 참여기관 간 연계 및 테스트 지원
사업비 지원 기준	○ 총 사업비의 75% 이내 정부지원(최대 상한액: 7억) ※ 중견기업의 경우 70%, 대기업의 경우 50%이내이며, 최대 상한액은 '26년 최종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○ 총 사업비의 25% 이상은 민간부담금(현물+현금) 편성 ※ 중견기업의 경우 30%, 대기업의 경우 50%이상 ※ 민간부담금의 현금 부담 비율은 대기업 15%, 중견기업 13%, 중소기업 10% 부담 ※ 마이데이터 전송체계 구현을 위한 공공성, 공익성, 지원기관 참여 유도 등을 고려하여 공공·비영리기관 참여 시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음 ○ 사업예산 계획 작성 시 지원금에 포함하여 신청 ※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(수수료)에 편성 필수
선정 기준	○ 발표평가 결과 70점 이상 사업자 중 고득점 순 상위 1개 선정 ※ (1차 서면평가) 최종 지원사업 수의 3배수 이내 선발 → (2차 발표평가) 1개 수행기관 선정 ※ 평가대상 기업이 3배수 이하인 경우 서면·발표평가 통합

□ 사업 목표

- 마이데이터 중계 업무* 수행 및 참여기관 연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마이데이터 제도 운영 및 지속적인 전송체계 고도화

*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업무

□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2026년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운영 지원사업
- 사업기간 : 협약 체결일 ~ 2026년 12월 31일(약 11개월)
- 지원대상 :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42조의9제1항제1호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(중계전문기관)으로 지정되어 중계 인프라를 운영 중인 기업 또는 기관(1개 社)

※ 공모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중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중계 운영 가능한 기관

- 지원금액 : 7억 원* 이내 지원(부가세 포함)

* 지원 방식은 상호출자(매칭펀드) 방식으로 지원

※ '26년 예산의 최종 확정여부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

- 지원내용 : '26년에 수행하는 중계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용 지원
- 수행내용 : 마이데이터 중계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, 마이데이터 유관 사업* 및 참여기관 연계 지원

* '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', '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운영 관리 사업'

- 마이데이터 표준 중계모델 기반의 중계시스템 모니터링 · 보안관제 및 “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” 개선 등 중계전문기관 업무 수행
- 마이데이터 유관 사업 및 마이데이터 참여기관 간 안전하고 신속한 연계(테스트 포함)를 위해 연계 지원 체계 구축 · 운영
- 마이데이터 중계시스템 관련 문서 등 작성 및 보완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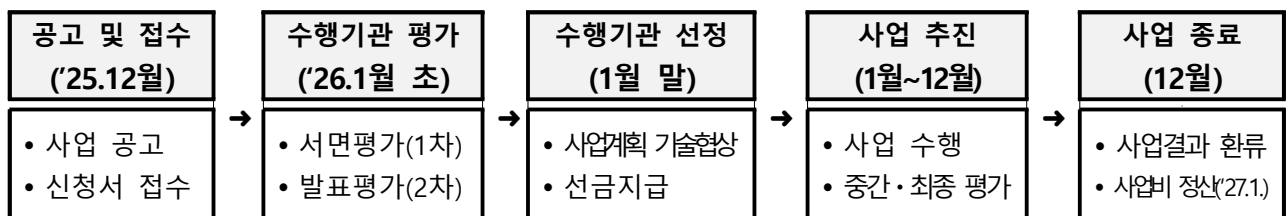
□ 선정 방식

○ 4단계 심사절차를 걸쳐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선정

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절차		
단계	주요 내용	추진 주체
(1단계) 사전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필수제출 서류 충족 여부 확인 서류의 적합성 검증 및 사업 방향과의 부합성 등 적부 평가 및 검토 	한국인터넷진흥원
(2단계) 선정 평가 (서면, 발표평가)	서면평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도 및 사업 이해도, 사업계획의 적정성, 신청기관의 전문성 등 제안서 평가 ※ 평가대상 수가 3배수 이하 시 서면·발표평가 통합 가능 (통합 선정평가 경우, 발표평가 기준으로 평가) 	평가위원회 (3배수 통과)
	발표평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도 및 사업 이해도, 사업계획의 적정성, 지속가능성,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 등을 고려한 사업 계획 등 제안서 설명 및 발표평가 ※ 사업책임자(PM)의 사업수행계획 발표(20분), 질의응답(15분)을 통하여 발표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신청기관에 대하여 점수 순으로 우선 적격업체 결정 	평가위원회 (1배수 선정)
(3단계) 원가산정 및 기술 협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계획서의 제안금액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하는 외부 원가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산정 사업 내용에 대하여 사업 범위, 지원 내용, 과업 내용, 성과목표 등을 협상 	한국인터넷진흥원
(4단계) 심의·확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 범위 및 예산 등을 심의·조정하고 수행기관 최종 확정 	한국인터넷진흥원

- 「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」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,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실시
 - ※ 평가방식은 변동 가능
- 평가점수는 최고,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점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
-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 순위 선정
 - ※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

□ 추진 방법 및 절차



II

지원사업 상세 안내

1. 지원사업 지원 내용

□ 지원 대상

-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42조의9제1항제1호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(중계전문기관)으로 지정되어 중계 인프라를 운영 중인 기업 또는 기관(1개 社)

※ 공모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중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중계운영 가능한 기관

□ 지원 내용

- (예산 지원) 지원금 상한액(7억 원*) 이내에서 제안 가능

* 최대 상한액은 '26년 최종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- 신청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(인건비, 기자재/시설 등)을 통해 전체 사업비의 25% 이상 부담(중견·대기업의 경우 각각 30%, 50% 이상 부담)

< 정부지원금 지원 및 사업자부담 사업비의 현금 부담 기준 >

구분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
정부지원금 지원기준	전체사업비의 75% 이하	전체사업비의 70% 이하	전체사업비의 50% 이하
사업자부담 사업비의 현금 부담기준	사업자부담 사업비의 10% 이상	사업자부담 사업비의 13% 이상	사업자부담 사업비의 15% 이상

※ 전체 사업비 = 정부지원금 + 사업자부담금(현물+현금)

※ 기업 규모별로 지원금 등 지원 기준에 따라 사업자부담금을 설정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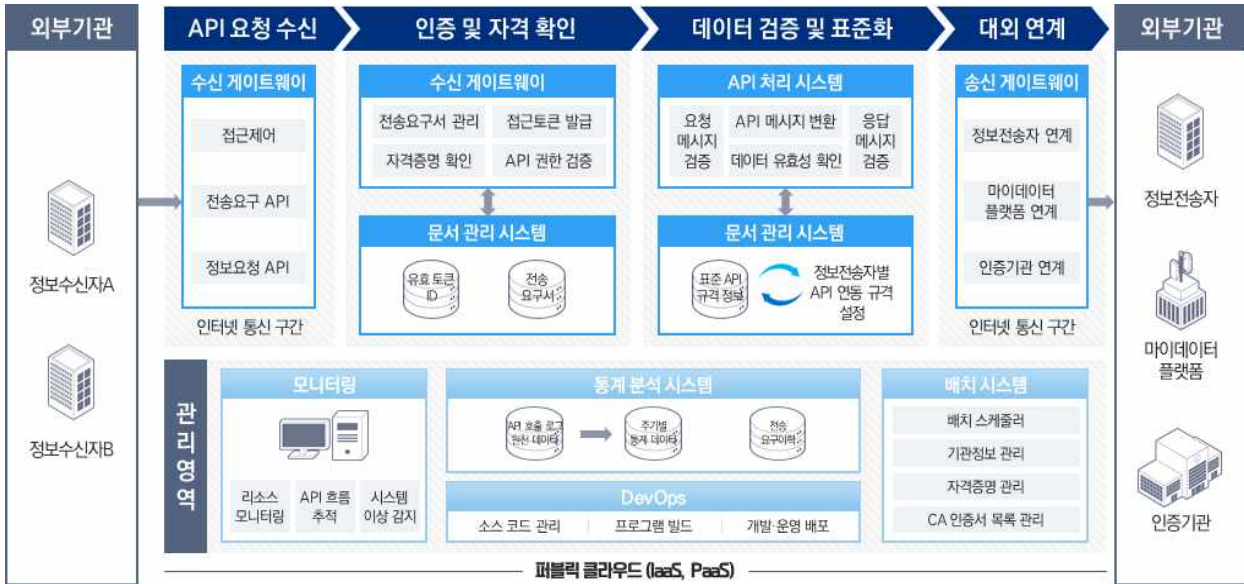
※ 「개인정보 보호·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」 제20조(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기준) 준용

※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운영 업무 특성상 공공·비영리기관 참여가 가능하며, 공공·비영리기관 참여 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음

※ 자세한 현금 부담 기준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」 참고

□ 수행 내용

[전 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중계 인프라 구성도]



○ 마이데이터 표준 중계 인프라 모델 기반의 중계시스템 운영

- 마이데이터 표준 중계모델 기반으로 구축된 중계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
- 24H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계시스템 모니터링*(시스템 성능, 네트워크 상태 등)· 보안관제(위협 탐지, 접근 제어 등) 수행

* 모니터링 보고서(월별) 제출 및 (해당 시) 비상상황 경위서,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

- 중계시스템의 확장성, 보안성 향상을 위한 중계시스템 운영 체계 (서비스 품질 고도화, CI/CD 구축·개선 등)고도화 수행
- 정보 전송항목 확대·변경 및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전송 절차 변경 시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 개선 지원**

** 표준 API 규격 개선 및 변경 보고서 제출

○ **마이데이터 참여기관 연계 지원 체계 구축 · 운영**

- ‘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(정보수신자)’ 및 ‘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운영관리(지원플랫폼)’ 등 유관사업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하며, 관련 단위 · 연계 테스트에도 적극 참여
- 관련 분야 중계전문기관(의료, 에너지 등)과 협업 필요시 적극 지원
- 마이데이터 참여기관 대상의 중계시스템 연계 및 기술 관련 문의사항을 지원하는 “중계시스템 기술 지원(가칭)” 게시판*을 구축 · 운영
- * 게시판은 접근이 용이한 웹사이트를 기본으로 하되, 개인정보 보호(민감정보 마스킹 등) 및 정보보안(인증 및 접근통제 등)을 고려하여 구축해야함
-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및 유관사업 기관 대상의 중계시스템 연계 (표준 API 연동, 개발 및 테스트 등) 컨설팅 지원
- 마이데이터 참여기관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중계시스템과 연동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계시스템 테스트 샌드박스 개발

[테스트 샌드박스 개발 시 필수 고려 사항]

- 중계시스템의 운영환경과 샌드박스 환경은 논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분리 필요
- 개발자 또는 등록된 참여기관만 접근 가능하도록 계정 기반 접근 제한 설정
- API 엔드포인트, DB, 인증 서버 등은 테스트 샌드박스 전용 환경으로 구성
- 운영 데이터가 노출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더미 데이터 또는 샘플 데이터만 사용

○ **마이데이터 중계시스템 관련 문서* 등 작성 및 보완 지원**

- 중계시스템 전송절차 및 기술규격 변경, 분야 · 전송정보 확대 등 변경 사항 발생에 따라 마이데이터 관련 안내서, 매뉴얼, 관리지침 등 관련 문서에 대한 보완 적극 협조
- 테스트 샌드박스 환경 사용법(연동 프로세스, 오류 대응 등 포함) 문서 작성
-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별도의 가이드라인 제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이드라인 제작 가능

*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전송 절차 및 기술 가이드라인,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 및 명세, 중계시스템 구축 안내서 등

2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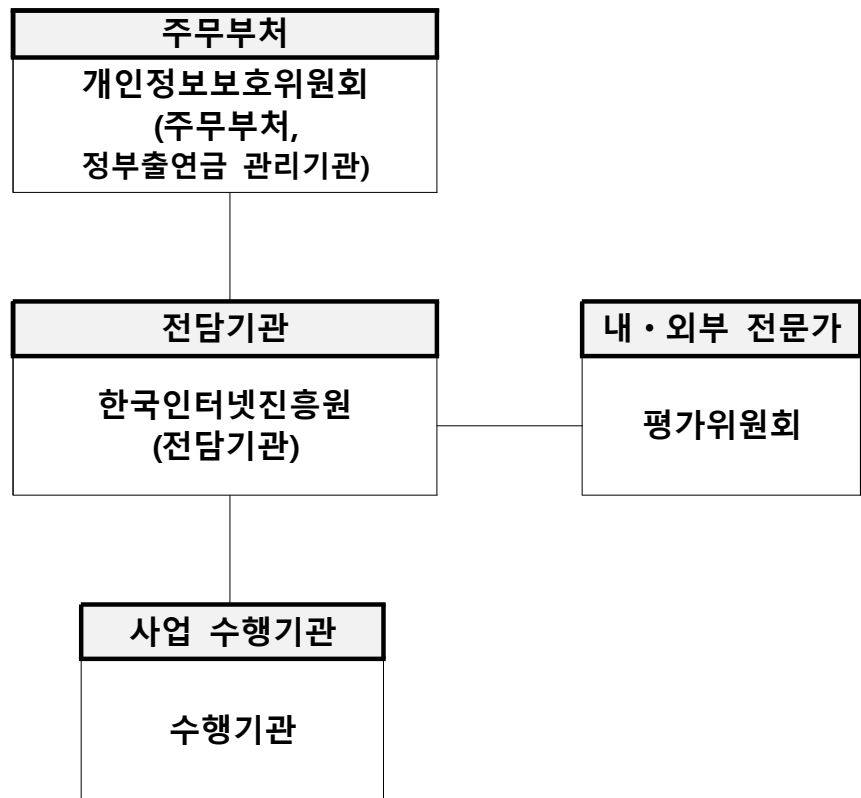
추진절차 및 체계

□ 사업 추진절차

구분	일정	주요 내용	비고
사업시행 공고	'25년 12월 초	·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 접수	제안기관→KISA
사업 설명회	12월 중	· 사업개요 소개, 질의응답 등 사업 설명회 개최	KISA
사전검토	'26월 1월 초	· 지원대상 및 필수 서류 제출 충족 여부 확인 · 적합성 및 사업 방향과의 부합성 등 적부 평가	KISA
1차 선정평가 (서면평가)	1월 초	· 제도 및 사업 이해도, 사업계획의 적정성, 신청 기관의 전문성 등 제안서 평가 · 2차 평가 대상자 선정(3배수) ※ 평가대상 수가 3배수 이하시 서면·발표평가 통합 가능	평가위원회
2차 선정평가 (발표평가)	1월 초	· 제도 및 사업 이해도,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 등을 고려한 사업 계획 등 제안서 설명 및 발표평가 · 최종 사업자 선정(1개)	평가위원회
원가산정 및 기술협상	1월 중	· 신청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원가산정 및 기술협상 실시	KISA
심의·확정 (지원금액 확정)	1월 말	· 사업범위 및 예산 등을 심의·조정하고 최종 지원 사업자 확정	KISA
협약체결	1월 말	· 수행기관 지원 금액 확정 및 협약 - 심의·조정된 사업계획서 제출	KISA↔수행기관
착수보고 및 사업수행	1월 ~ 12월	· 착수회의 및 사업수행계획(PM) 발표	KISA↔수행기관
1차 지원금 지급 (선금)	1월	·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보험증권 등 수령 · 선금(70%) 지급	KISA→수행기관
중간평가	7월	· 사업 진행 현황 평가	KISA→수행기관
2차 지원금 지급	8월	· 1차 지원금을 제외한 잔금(30%) 지급	KISA→수행기관
최종평가	12월	· 최종 사업 결과 평가	평가위원회
최종 성과공유회	12월	· 성과공유회 발표 등	KISA↔수행기관
사업비 정산 및 반납	'27.1월	·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비 반납 등 추진	KISA↔수행기관
최종보고서, 정산보고서 제출	1월	· 최종보고서 제출(정산내역 포함) · 정산보고서는 회계감사 확인하여 제출 ※ 회계감사비용은 지원대상 사업자가 지급	수행기관→KISA

※ 추진절차 및 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□ 사업추진 체계



○ 기관·기업별 역할

구 분	주 요 업 무
개인정보보호위원회 (주무부처, 정부출연금 관리기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•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• 정부출연금 관리, 배정 및 정산 • 정부출연금 사업 성과관리 및 점검
한국인터넷진흥원 (전담기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• 지원사업 공모 및 협약 • 사업관리, 예산집행 및 정산, 성과평가 • 사업수행기관 현장 점검 실시
평가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부사업계획 및 지원사업 제안서 심의 • 사업 평가, 세부내용 검토, 우선순위 부여 등 심의
수행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계 인프라 운영 지원사업 수행 • 중계시스템 수정·보완 등 고도화 • 중계 인프라 운영 • 마이데이터 유관 사업 및 참여기관 연계 지원 체계 구축·운영 • 중계시스템 관련 기존 산출물 보완 지원 • 사업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•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

3.

사업 신청 안내

□ 신청방법 및 접수

○ 공고 및 접수기간

- 접수 기간 : 2025. 12. 5.(금) ~ 2026. 1. 5.(월) 14:00까지
- 접수마감일 : 2026. 1. 5.(금), 14:00까지 ※ 제출기한(14:00) 이후 접수 불가

○ 제출방법 :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
(<https://cont.kisa.or.kr>)

○ 제출자료

번호	서류명	필수제출	비고
1	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공문	필수	자체 양식
2	지원사업 신청서	필수	붙임(서식1호) 참조
3	사업계획서(HWP)	필수	붙임(서식2호) 참조
4	참여인력 세부계획	필수	붙임(서식3호) 참조
5	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	필수	
6	청렴계약이행각서	필수	붙임(서식4호) 참조
7	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, 제3자 제공 동의서	필수	붙임(서식5호) 참조
8	보안서약서	필수	붙임(서식6호) 참조
9	사용인감계	해당시	붙임(서식7호) 참조
10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해당시 ※ 공공기관, 비영리제외	붙임(서식8호) 참조
11	현금 출자 약약서	해당시	붙임(서식9호) 참조
12	사업자등록증 사본	필수	-
13	법인등기부등본	필수	-
14	인감증명	필수	-
15	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	필수	유효기간 내
16	기관유형 확인서 (대·중견·중소기업 확인서, 비영리기관 설립허가증 등)	필수	유효기간 내 ※ 비영리기관의 경우 고유번호증, 공공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
17	전년도(23~24년도) 재무제표	필수 ※ 창업 2년 미만 제출 제외	회계법인 혹은 공인회계사/세무사 도장날인
18	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	필수 ※ 공공기관, 비영리제외	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급
19	· 제안사의 발표자 및 참석자의 “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” ※ 발표당일 신분증 지참	필수	참여기관의 발표자 및 참여인력의 증명서
20	중계전문기관 지정서	필수	-

※ '유효기간 내'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의 잔여 유효기간은 접수마감일 기준 5일 이후 까지여야함
 ※ 2차 선정평가(발표평가)를 위한 사업제안 발표자료는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,
 발표평가 대상 업체에 한하여 별도 제출

□ 사업 설명회

- 일시 : 2025. 12. 18.(목), 14:00~15:00
- 장소 : 전남 나주시 배뫼 2길 25, 스페이스코워
- ※ 본 사업 설명회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 예정입니다.

□ 문의처

- 한국인터넷진흥원 마이데이터운영팀 사업담당
(061-820-2685, rkdwnsrn5@kisa.or.kr)
- ※ 질문사항은 서류제출 마감일 3일 전까지 가능하며, 전화문의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.
필요한 경우, 문서 또는 전자우편(E-mail)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사업 신청 제한 사항

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,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·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

- 총 사업비(민간부담금+정부지원금)의 중소기업은 25%, 중견·대기업은 각각 30%, 50% 이상 부담하지 않는 경우 참가 제한
- ※ 비율 산정 시, 소수점은 제외함
- 해당 중계시스템 운영 등 본 지원사업의 과업의 목적과 동일하게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정부 출연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, 이 경우 본 사업에 지원 불가
-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조사 또는 제재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, 본 사업에 지원 불가
-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 받은 경우에는 본 사업 공모에 신청할 수 없음
- 모든 참여인력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타 과제수는 3개 이내로 하며, 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의하여 3명까지 최대 타 과제수를 4개로 정함

- 수행기관의 자격이 중계전문기관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수행기관, 대표자, 사업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- ① 기업의 부도, 휴.폐업
- 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다만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)
- 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다만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)
- ④ 기업신용도 B등급 미만 (공공기관, 비영리기업 제외)
- ⑤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
* 단, 법정관리,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
- 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인 경우
- ⑦ 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

□ 사업 신청 유의사항

-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, 접수는 온라인만 가능함 (<https://cont.kisa.or.kr>)
-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
- 전담기관(한국인터넷진흥원)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
- 접수 시 공고서상의 제출 자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,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서류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. 서류미비로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, 미접수 사유를 신청자에 통보함
-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참가자격이 상실되고,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함
-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, 현장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, 제안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
-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사업계획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
-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 발생 시 제안기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
- 제안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,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업계획서나 기타 붙임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
- 사업계획서 및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

-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, 동일한 사항에 대해 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경우 계약서 내용을 우선함
- 필요시 제안기관에게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- 평가위원회, 개인정보보호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, 지원예산 등 조정 가능
- 본 공모안내서는 추후 공모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, 별도 공지 예정
- 다음의 “사업계획서(신청서) 작성요령” 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

□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

- '별첨서식'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서(한글 50매 내외)의 목차를 순서대로 작성
 - 필요한 경우 목차나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
 - 별첨, 붙임 등 추가 자료는 목차와는 별도로 구성이 가능
-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며 각 쪽에는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
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
 - ※ '~를 제공할 수도 있다, '~이 가능하다, '~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사용 자제
- 신청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, 사용된 영문약어의 전체 명칭을 풀어서 기술
- 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사업계획서 내부에 기재된 '작성요령' 등의 설명 문구는 삭제 후 작성하여 제출
-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은 전담기관(KISA)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,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

- 사업계획서의 요금은 한화(원)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,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작성하며, 적용환율은 공고일 당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(매매기준율)을 적용함
- 제출한 신청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, 협약체결시의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
-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단계별 추진방법과 성과목표(정량적인), 기대 효과 등을 명확히 수립 및 기재하여야함

□ 성과물 및 기타사항

- 사업의 수행과정 또는 수행결과로 생산한 유형적·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나, 활용·홍보 등을 위한 자료는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제공
 - ※ 다만,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명의로 공개되는 가이드라인, 안내서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소유
 - ※ 협약 이후 향후 1년간 해당 서비스/제품의 홍보 시, 본 사업의 지원을 밝혀야 함
 - ※ 특허권,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결과물의 소유자는 당해 권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,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요
- 수행기관은 마이데이터 제도 활성화 및 성과 관리를 위하여 추후 지원 사업에 따른 현황 조사, 성과 조사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 - 본 사업 수행 결과 및 실적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며, 개인정보 보호위원회·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요청 시 제공해야 함

Ⅲ

평가 절차 및 안내

1.

수행기관 선정

사업추진의 전문성,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
4단계 심사절차를 거쳐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

□ 평가 절차

단계	주요 내용	추진 주체
(1단계) 사전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필수 서류 제출 충족 여부 확인 · 서류의 적합성 검증 등 적부 평가 및 검토 	한국인터넷진흥원
(2단계) 선정 평가 (서면, 발표평가)	서면평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도 및 사업 이해도, 사업계획의 적정성, 신청기관의 전문성 등 제안서 평가 ※ 평가대상 수가 3배수 이하 시 서면·발표평가 통합 가능 (통합 선정평가 경우, 발표평가 기준으로 평가) 	평가위원회 (3배수 통과)
	발표평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도 및 사업 이해도, 사업계획의 적정성, 지속가능성,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 등을 고려한 사업 계획 등 제안서 설명 및 발표평가 ※ 사업책임자(PM)의 사업수행계획 발표(20분), 질의응답(15분)을 통하여 발표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신청기관에 대하여 점수 순으로 우선 적격업체 결정 	평가위원회 (1배수 선정)
(3단계) 원가산정 및 기술 협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계획서의 제안금액에 대하여 진흥원이 지정하는 외부 원가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산정 · 사업 내용에 대하여 사업 범위, 지원 내용, 과업 내용, 성과목표 등을 협상 	한국인터넷진흥원
(4단계) 심의·확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 범위 및 예산 등을 심의·조정하고 수행기관 최종 확정 	한국인터넷진흥원
중간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한 중간보고 및 평가 	평가위원회
최종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최종 사업 결과 평가 	평가위원회

□ (1단계) 사전 검토

- (개요) 최소한의 자격 요건 검증 및 효율적인 선정 평가의 운영을 위해 제출 서류 기반의 내부 사전 검토 진행
- (대상) 공모 기간 내에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청기관
- (검토 기준) 필수 서류 제출 여부, 서류의 적합성 검증 및 사업 방향과의 부합성 등 사업 계획 검토를 통해 평가대상 여부 결정
 - ※ 기한 내에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서류만을 검토
 - ※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하되, 신청기관의 검토기준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담기관이 판단할 경우 면담조사 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
- (검토 결과) **(적격)** 선정 평가 진행, **(부적격)** 선정 평가대상 제외
 - ※ 검토 결과가 '적격'인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

[사전 검토 기준(안)]

검토 항목	내용
신청서류의 적정성	사업계획서 및 필수 서류의 제출 여부
사업비 편성의 적정성	자체부담금 투입 비율 준수 등 사업비 편성 적정 여부
제한사항 위배 여부	중복지원 여부, 기업의 부도 등, 본 공모안내서 12~13p에 따른 '사업 신청 제한 사항' 위배 여부 확인

※ 「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」 제9조 및 「개인정보 보호·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」 제13조 준수

□ (2단계) 선정 평가(서면·발표)

- 1차 서면평가
 - (평가 대상) 1단계 사전 검토 결과가 적격인 신청기관
 - (평가 기준) 마이데이터 제도 및 사업 이해도, 사업계획의 적정성, 수행 기관의 역량 및 전문성 등 제출한 제안서 평가
 - ※ 서면평가 대상수가 3배수 이하인 경우 서면·발표평가를 통합하여 진행 가능

- (평가 방법)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'서면평가 평가 기준'에 따른 제출 서류 평가
- (평가 결과) 서면평가의 결과가 70점 이상인 신청기관 3배수(3개) 통과

[서면평가 평가 기준]

구분	평가 기준	배점
마이데이터 제도 및 사업 이해도 (20)	○ 마이데이터 제도 및 중계시스템 기술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도	10
	○ 사업 목적 및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	10
사업계획의 적정성 (30)	○ 사업 추진 방법·전략 체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	10
	○ 사업계획의 현실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	10
	○ 유사 사업수행 경험 및 성과	10
수행 역량 및 전문성 (50)	○ 마이데이터 중계시스템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	30
	○ 마이데이터 유관 사업 및 참여기관 간 구축·운영 계획의 구체성	20
총점		100

○ 2차 발표평가

- (평가 대상) 서면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인 신청기관(3배수)
- (평가 기준) 마이데이터 제도 및 사업 이해도,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, 사업수행 내용의 구체성, 지속가능성 등 발표평가
- (평가 방법)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 '발표평가 평가 기준'에 따른 사업책임자의 사업수행계획 발표(20분), 질의응답(15분)을 통한 발표평가
 - ※ 발표시간은 공모참여기관의 수 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(평가 결과) 발표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기관에 대하여 평가 점수순으로 적격 사업자 순위 결정
- 2단계 발표평가에서 적정 수준의 신청기관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추가 공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

[발표평가 평가 기준]

구분	평가기준	배점
마이데이터 제도 및 사업 이해도 (15)	○ 사업 목적 및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-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등 과의 연계 수준	10
	○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기술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도	5
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 (15)	○ 사업 추진 방법·전략·체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 - 세부 수행계획의 체계적 추진방안	10
	○ 신청기관의 전문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	5
사업수행 내용의 구체성 (30)	○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운영 계획의 구체성 - 운영 계획 및 운영 방식의 적정성 - 중계시스템의 운영 체계 고도화 계획의 창의성 및 구체성	15
	○ 참여기관 연계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- 신규 참여기관 확장에 따른 연계 방안의 실효성 및 타당성 - '기술지원 게시판' 구축·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- 정보수신자 테스트 베드 구현 계획의 구체성 및 안전성	15
안전성 확보조치 수준 (20)	○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장애 대응 및 보안성 - 장애 대응조치 및 중계시스템 보안성 강화 방안 제시	10
	○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 수준 - 사업 관련 시설·장비 등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	10
사업관리 및 지속 가능성 (20)	○ 사업 종료 후 지속·운영 가능성	10
	○ 예상 산출물, 보고·검토 계획의 적절성	5
	○ 사업비(예산) 편성 및 예산집행 계획의 타당성	5
총 점		100

□ (3단계) 원가조사 및 기술협상

- (원가조사)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 제안 금액에 대하여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원가산정 및 적정성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금 확정
- (기술협상)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제안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사업 범위 전반에 대한 기술협상을 통해 최종 사업내용 확정
 - ※ 기술협상 과정에서 선정 기관이 협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 기관 선정 가능
 - ※ 원가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거나 기술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, 우선 협상대상자에서 제외

□ (4단계) 심의 · 확정

- 원가조사 및 기술협상 결과를 통해 최종 확정된 지원금 사업수행 계획 기반의 협약 체결

□ 평가위원회

- 평가위원회는 총원 9인 이상으로 구성하며, 평가의 전문성,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(총원의 80% 이상)등으로 구성
 - ※ 사업특성에 따라 법, 제도, 표준, 기술, 정책 등 다양한 전문영역의 전문가 포함
- 선정평가(서면 · 발표), 중간평가, 최종평가 시 평가위원회 개최
- 평가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
 - ※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기관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 후, 기술협상, 심의 · 조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
- 이해관계, 불공정 논란 등으로 인해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음

2.

중간·최종 평가

□ 중간평가

- (개요)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한 중간보고 및 평가로서, 중간보고서 등 중간산출물을 제출 받아 대면 평가 진행(우수·보통·미흡) 필요시, 사업 점검, 기술 자문,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음
- (사전 점검) 전담기관은 중간평가를 실시하기 전 과제수행 결과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면담조사, 현장점검 등 실시 가능
- (평가 방법) 평가위원회를 통한 '중간평가 평가 기준'에 따른 수행기관의 중간보고서 및 중간산출물 등 기반의 발표 평가
 - ※ 세부 평가일정/절차, 제출자료 등은 전담기관(KISA)이 별도로 정함
- (평가 결과) 70점 미만인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을 조기종료 처리 하거나 환수조치 가능
 - ※ 추후 동 사업 신청 시 감점 또는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[중간평가 평가 기준(안)]

평가지표	평가항목	배 점
목표달성도 (30)	○ 계획대비 추진 실적	20
	○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준비도	10
수행방법의 적정성 (30)	○ 추진전략의 적합성	10
	○ 계획된 자원투입의 적절성	10
	○ 중간산출물의 적정성	10
향후 계획의 적정성 (30)	○ 목표 달성 이행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	30
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(10)	○ 예상 장애요인 및 해소방안의 적정성	10
총 점		100

□ 최종평가

- (개요) 결과보고서 등 최종산출물을 제출 받아 대면 평가 진행(우수 · 보통 · 미흡)
- (평가 방법) 평가위원회를 통한 '최종평가 평가 기준'에 따른 수행기관의 최종보고서 및 최종산출물 등 기반의 발표 평가
 - ※ 세부 평가일정/절차, 제출자료 등은 전담기관(KISA)이 별도로 정함
- (평가 결과) 70점 미만인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을 환수 조치 가능하며, 추후 동 사업 신청 시 감점 또는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(재평가) 전담기관(KISA)은 제출 자료 등이 미비하여 평가가 곤란한 경우,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일정기간을 두어 자료를 보관하게 한 후 평가 재 실시 가능
 - ※ 평가의 곤란 여부, 일정기간 등은 전담기관(KISA)이 별도로 정함

[최종평가 평가 기준(안)]

평가지표	평가항목	배 점
사업비 집행실적 (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비 집행 현황 및 비목별 집행의 적절성 ○ 불용액 발생 여부 및 집행 부진 시 사유의 적절성 	5
목표달성도 (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계획대비 추진 실적(성과목표 달성여부) 	30
결과물의 적정성 (4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계전문기관 운영 및 참여기관 연계 지원 체계 구축·운영의 적정성 	20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종 산출물 수준의 적정성, 결과보고서 등 산출물 작성 충실도 	20
지속가능성 확보 (1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계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보수 용이성 ○ 기술 지원 및 보안 관리 체계의 구체성 	15
외부지적사항 환류여부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간평가, 현장실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 ○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시행 여부 	10
총 점		100

※ 사업 최종평가 기준안은 변동 가능하며, 별도 통보함

IV

기타 참고사항

1. 협약 및 사업수행 관리

□ 협약 안내

- 협약 대상자로 최종 결정될 경우 지원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
- 선금은 지원금의 70%를 지급하며, 선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
 - 이행(계약)보증보험증권의 보험가입금액은 정부지원금의 10%, 보험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로 함
 -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전체금액(100%)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,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
- 협약 관련 문의처 : 한국인터넷진흥원 마이데이터운영팀 사업담당
(☎ 061-820-2685, ✉ rkdwnsrn5@kisa.or.kr)

□ 진도관리 및 보고

- 수행기관은 협약 체결 후 일주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WBS 제출
- 일상적인 수행 보고는 월간 및 수시 보고로 진행
- 수행기관은 KISA가 방문실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
- 수행기관은 KISA가 마이데이터 중계전문기관 지원을 위해 수행하는 보안점검 등에 따르고, 관련자료 요청 시 이에 충실히 응해야 함

- 착수보고 및 중간·최종발표는 총괄책임자(PM) 발표 수행
- 수행기관은 사업계획 변경 시,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변경을 요청하고 협의한 후 변경하여야 함
- 사업자는 사업종료 전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보고를 실시

□ 사업비 관리

- 정부지원금 사용
 - 집행은 지정하는 회계시스템을 활용하며, 관련 교육 시행 시 반드시 참여할 것(과제 책임자(PM) 필수 참여), 본 지원사업 종료 시까지 책임 담당해야 함
 -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에 대한 집행기간은 협약서 상의 수행기간으로 함
- 「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」의 별표 1에 따라 비·세목 내역별로 사업비를 편성할 것
 - 편성된 사업비로 수행기관 간 제품/시스템/서비스 등 거래 불가
 - ※ 「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」의 별표3의 사업비 불인정 기준에 따를 것
- 수행기관 간 또는 특수관계자(자·모회사, 계열사 등)거래는 정부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中 현금을 사용할 수 없음
- 지원대상 사업자는 민간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을 관리하는 각각의 별도 계좌(법인명의)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(또는 신용카드)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함
 - ※ 개인 사업자의 경우, 대표자 명의로 별도 계좌 개설 가능(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)
- 지원금 사용원칙 및 영수증 처리, 증빙서류 인증범위 등은 아래 사업비 사용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

< 사업비 사용 지침 >

□ 별도 계좌개설 및 관리

- 가. 각 지원 대상 사업자는 민간부담금과 지원금을 관리하는 각각의 별도 계좌(법인명의)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(또는 신용 카드)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함
 - ※ 다만 전담기관이 수행기관의 통합계좌 사용 혹은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개설이 불가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, 증빙자료 및 공문 등을 통해 전담기관에게 승인 받아 사업비 관리 가능

□ 총 사업비 사용원칙 및 집행잔액 반납

- 가. 총 사업비(정부지원금 + 민간부담금)는 협약기간 내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, 총 사업비, 지출비목, 추진일정 등 당초 제시했던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함
- 나. **지원 대상 사업자는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함**
- 다.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총사업비 비목 간 변경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 집행금액을 인정함 (※ 단, 직접비중 인건비와 타세목간의 예산변경은 인건비 감액만 가능)
- 라. 정산 시 총 사업비 집행 잔액과 불인정 금액은 지원금의 집행 잔액으로 간주하여 해당 금액 전액 반납 처리

□ 영수증 처리 및 증빙서류 인정범위

구분	종류	인정범위	증빙자료
계좌이체	현금 영수증	·영수증에 법인등록번호 입력시에만 인정	사용내역서
	세금 계산서	·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(인터넷뱅킹 권장)	송금영수증(은행발급), 원천징수영수증, 계약서, 사용내역서(일수, 단가, 내용 등 포함), 회사소개서 (또는 이력서), 사업자등록증(또는 신분증 사본)
	수령 확인증	·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(인터넷뱅킹 권장) ·자필 서명 시에만 인정	송금영수증(은행발급), 원천징수영수증, 계약서, 사용내역서(일수, 단가, 내용 등 포함), 회사소개서 (또는 이력서), 사업자등록증(또는 신분증 사본)
카드 사용 증빙	사용 영수증	·사용 후,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을 때만 인정 ·카드대금 지급계좌를 지원금계좌로 설정한 경우에만 인정(별도카드 불인정)	사용내역서, 지급영수증(카드사 발급)

※ 모든 지출은 계좌이체 및 체크(신용)카드 사용이 원칙이며, **간이영수증의 경우 불인정**

- 가. 총 사업비의 증빙서류 원본은 비목별, 일자별로 편철하여 사업종료 후 5년 간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, 추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
- 나. 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총 사업비 관련 증빙자료 사본 일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
- 다. 원천징수 신고납부 대상인 인건비성 수당의 경우,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차액을 수령인의 계좌에 송금하여야 하며,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사업비로 인정(원천징수지급조서 작성 첨부)
- 라. 모든 지출은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결과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, 지출목적이 합당하고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운영 지원사업의 실제 사업비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가 구비될 경우에만 총 사업비 집행금액으로 인정함

※ 기타 사업비 관리와 관련해 위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**“사업수행 시 준용 규정”** 참고

□ 사업 계획의 변경

-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KISA 사업담당부서에 서면 (공문 등)으로 통보 및 협의하여야 하며,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
-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
- 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업 계획의 변경을 통보 및 승인 요청하는 경우, 사전에 회계법인의 관련 내용을 검토를 받아야 함

1. 승인사항 (수행기관 변경 신청 공문 및 자료 제출 → 전담기관 승인 여부 회신)

가. 사업 목표의 변경*

- * 국내외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에 따른 목표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

나. 사업책임자의 변경

다. 최초 협약한 사업비 중 비목간 변경

라. 최초 협약한 사업운영비의 20% 이상 증액

마.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 사업비 총액의 변경

바.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

사. 비목 중 인건비, 여비의 세목간 변경

아. 취득가액 3천만원(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) 이상인 기자재 및 시설 중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 계획서에 포함된 기자재 및 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

2. 통보사항 (수행기관 변경 내용 공문 및 자료 제출 → 전담기관 변경 완료)

가. 수행기관의 주소(연락처), 대표자, 명칭의 변경

나. 최초 협약한 사업비 중 세목간 변경

다. 제1호의 승인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협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

2.

회계정산

□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안내

○ 사업 수행 완료 후 사업비에 대한 정산 실시

① 수행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, 회계법인과 정산 및 정산일정·방법 등 협의

- 회계감사비용은 지원대상 사업자가 지급하며, 지원금*에 포함

* 사업계획서 작성 시 「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」 별표 1. <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>에 따라 회계 감사 비용 (1,600천원) 책정 필수

② 수행기관은 정산보고서 작성 후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제출

- 사업수행지침 및 정산보고서 제출양식

- 지출 근거서류, 영수증, 계좌 거래내역(민감부담금, 정부지원금)

- 기타 지출 내역이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 등 회계감사에 필요한 근거 서류

③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 실시 및 불인정 금액·반납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 첨부하여 최종정산보고서 수행기관에게 송부

④ 수행기관은 회계감사 및 정산결과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 정산 보고서 제출공문과 함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

- 정산보고서 및 영수증 사본 일체를 순서대로 PDF로 통합하여 1부 제출

▶ 정산보고서 제출서류(예시)

· 제출방법: 제출공문이 포함된 정산보고서 전자우편으로 제출

1) 정산보고서 1부

2) 사업비 거래내역 확인서 각 1부(개설은행 발급)

3) 사업비 계좌 해지 후 통장사본(전체 페이지) 또는 거래내역서 사본

4) 회계감사보고서

5) 정산내역서

6) 지출원인 근거서류, 영수증, 계약서 등 회계감사 시 제출된 서류일체 사본

⑤ 수행기관은 회계감사 결과에 따른 최종 정산금액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한 계좌로 최종 정산잔액 송금 후 송금내역서 및 송금영수증을 e-mail로 전송

※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-22호 「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규정」에 의거, **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** 결과보고 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며, **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은 사업종료 후 반납**

- 반납 금액 : 총 사업비(지원금+자체부담금) 집행잔액, 이자*, 회계감사 결과 등 총 사업비 불인정 금액 반납

* 이자 : (사업기간내 발생하는 이자 + 사업 종료 후 별도 계좌 해지 시까지의 이자)

※ 단, 총 사업비(지원금+자체부담금) 정산 결과 불인정금액이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발생 이자만 반납

※ 정산은 사업종료 후 2달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

⑥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산결과 검토(필요시 실사) 후 오류발생 시 회계감사에게 재정산 요청

○ 최종보고서 제출

- 지원대상 사업자는 최종 결과보고서, 최종 정산보고서(회계감사보고서 포함) 등 최종산출물 등의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함

▶ 최종보고서 제출서류(PDF로 제출)

- 1) 협약서 1부
- 2) 사업신청서 1부
- 3) 최종 결과보고서 1부
- 4) 최종 정산보고서 1부
- 5) 정산 근거 서류 등 일체

3. 기타 참고사항

□ 제재 조치

- 사업 수행 중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, 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결과가 ‘미흡(사업 결과 평가 점수가 70미만)’인 경우에는,
 - 정부출연금에 의한 사업비, 기자재 등을 환수하고 제안기관 및 책임자에 대해 일정기간 정부출연사업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
- 아래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히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부정 행위로 간주하여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에 따라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금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
 - 중간평가, 최종평가에 따른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
 - 수행기관이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
 - 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
- 제재처분의 절차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등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처리

□ 성과 관리

-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성과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 요청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음

□ 보안 준수

- 수행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,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은 수행기관에게 있음

- 사업 참여인력은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고,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-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, 자료 유출 등의 보안사고를 방지, 대응하기 위해 사업에 투입되는 참여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

< 보안준수 위반 사례 >

- 수행기관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전협의 없이 사업내용을 무단으로 언론에 보도함
- 사업 참여인력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전 승인 없이 컨퍼런스에 사업내용을 발표함

□ 사업 수행 시 준용 규정

- 기타 계약에 관련된 사항은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사업 내부규정을 준용함
- 본 공모안내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제반규정 및 지침을 준용할 수 있으며,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해석을 따름

- 정보통신·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[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-22호, 2025. 5. 13.]
- 개인정보 보호·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[개인정보보호위원회훈령 제96호, 2023. 6. 30.]
-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·관리규정 [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-2호, 2022. 1. 14.]
-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규정 [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-11호, 2024. 3. 15.]
-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[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97호 2025. 7. 25.]
- 기금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[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79호 2024. 10. 24.]
-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[기획재정부공고 제2024-285호, 2025. 1. 2.]